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제358회 임시회
2017. 8. 30.(수)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

건 설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일하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이광진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7년 8월 21일

나. 회부일자 : 2017년 8월 24일

3. 제안이유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피해자에 대한 충청북도 차원의 자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재난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와 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기준을 정함(안 제5조)

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재난피해자 생활안정과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등을 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바. 재난피해 지원금의 지급방법과 반환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예비비확보 등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상위법상 사회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한정되어 있어 재난피해자들의 구호 및 복구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차원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는 재난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을 규정함에 있어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만을 국고보조 지원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도지사)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에 따른 지원항목(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을 정하고 있는데, 본 제정안에서도 동일한 항목의 지원항목을 정해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음.

○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난 수호 및 복구 사업의 범주 내에서 지원기준을 정하였으며, ‘18.01.18. 시행 예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한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 기준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때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17. 8. 14.～‘17. 8. 20.)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상 사회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한정되어 있어 재난피해자들의 구호 및 복구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차원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